

29. 신용장대금 청구

☐ 내국신용장대금 청구(기본형, 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것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269,455,963원 및 이에 대한 20○○.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내국신용장 매입은행의 신용장의 조건이 되어 있는 부대서류에 대한 조사의무의 내용 내국신용장에 의한 환어음의 관계당사자간에 적용하기로 되어있는 신용장통일규칙 제7조 내지 제9조에 의하면 화환신용장 운영에 관하여 은행등 관계당사자는 관계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문면상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그 밖의 서류의 형식, 충분성, 진정성, 위조 여부 또는 법적 효력이나 서류상에 표시된 물품의 수량, 품질, 실재 여부 등에 관한 실질적 조사의무와 책임은 없으므로, 은행이 내국신용장에 의한 환어음을 매수함에 있어 그 신용장의 조건이 되어 있는 부대서류의 하나인 물품수령증이 그 당시 은행에 인감 및 필적신고가 되어 있는 발행회사 대표자 감명의로 된 것을 확인한 이상, 사실은 동서류가 위 회사 대표 이사직에서 해임된 무권한자인 갑에 의하여 허위작성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로써 필요한 서류조사 의무를 다한 것이 되고, 매입당시 동 서류의 발행일이 거래편의상 공란이었고, 발행회사의 신용이 악화된 상태였다 하여 위 서류가 정규성, 상태성 없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은행이 작성명의인의 대표자 자격등에 나아가 실질적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79.5.8. 선고 78다2006 판결)

㊦ 신용장대금 청구(외화채권)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19,457.46달러 및 그중 105,932.24달러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신용장 개설은행이 하자통지기간 내에 부당한 사유로 선적서류의 수리거절 통지를 한 후 그 기간 경과 후에 다시 정당한 사유로 거절 통지를 한 경우, 그 통지의 효력 유무
신용장 개설은행이 하자통지기간 내에 부당한 사유로 선적서류의 수리거절 통지를 한 후 그 기간 경과 후에 다시 정당한 사유로 거절 통지를 한 경우, 제1차 통지는 부당한 거절통지이므로 그 효력이 없고, 제2차 통지는 이미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 후의 통지이어서 역시 효력이 없다.(서울지법 1996.4.18. 선고 95가합46116 판결 ; 확정)

㊦ 신용장매입대금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청구, 외화채권)

1. 피고는, 원고 보람은행에게 미화 564,850\$ 및 그중 미화 233,000\$에 대한 2012. 10. 16.부터, 미화 127,750\$에 대한 2012. 10. 30.부터, 미화 39,250\$에 대한 2012. 12. 1.부터, 미화 164,850\$에 대한 2013. 1. 12.부터 각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주식회사 대우은행에게 미화 566,260\$ 및 그중 미화 97,600\$에 대한 2012. 10. 2.부터, 미화 53,650\$에 대한 2012. 10. 6.부터, 미화 298,700\$에 대한 2012. 10. 7.부터, 미화 116,310\$에 대한 2012. 12. 24.부터 각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위 각 금액에 대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액을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한 강제집행일 현재의 미국달러 대고객전신환매도율에 따라 환산한 원화 금액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신용장 매입대금청구의 법률관계에 관한 준거법

수입신용장 개설은행의 신용장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는 법률행위인 신용장상의 지급확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인바, 그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 등에 관하여는涉外사법 제9조에 따라 당사자가 지정한 준거법에 의하며, 당사자가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준거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단서를 적용하여 행위지법에 의하나, 신용장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의 소재지와는 다른 법률이 적용하는 곳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조에 의하여 신용장 개설은행의 지급확약 의사표시를 통지한 곳, 즉 개설은행의 소재지에서 시행되는 법이 행위지법으로 간주된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5다34385 판결)

☐ 신용장개설대금반환 청구(외화채권, 선택적 병합)

1. 피고는 원고에게 불화 495,000프랑과 미화 136,500달러 및 그중 위 불화 495,000프랑에 대하여는 2011.12.7.부터, 위 미화 136,500달러에 대하여는 2011.12.1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화 495,000프랑과 미화 136,500달러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1.8.7.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신용장개설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신용장대금의 지급지체가 신용장 개설의뢰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구성하는지 여부

신용장개설은행의 신용장개설의뢰인에 대한 신용장개설약정에 따른 의무는 그 약정에 따른 신용장 개설과 이에 따른 수익자의 선적서류 제시 및 교부로 종결되는바, 신용장개설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신용장대금의 지급지체가 신용장개설의뢰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서울고법 1994.7.13. 선고 93나42131 판결)

☐ 수입신용장결제대금지급 청구(외화채권)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3,871,315.79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위 미합중국 통화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위 금액을 강제집행일 현재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한 미국 달러의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신용장 매입은행은 서류를 매입할 때, 신용장 개설은행은 신용장대금을 상환할 때 각

선적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알았거나 위조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용장 개설은행의 신용장 개설의뢰인의보증인에 대한 신용장대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
 신용장 매입은행이 서류의 매입 당시 선적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알았거나 위조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신용장 개설은행도 서류매입대금 상환 당시 선적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알았거나 위조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용장 개설은행의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보증인에 대한 신용장대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3713 판결)

☐ 신용장대금 청구(본소) · 규제조치해제(반소)

(본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251,760,216원 및 이에 대한 2016. 9. 5.부터 이 사건 부분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반 소)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2016. 12. 4.자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기관불량거래처에 대한 정보교환 및 규제규약 제4조 제11항에 의한 해외황색거래처(국내 적색거래처)로 규제한 조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규제조치를 해제하라.

[참조판례] ①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의 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의 법원의 조치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소송 과정에서 그 외국의 판례나 해석 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법원으로는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내용을 확정할 수밖에 없다.

② 섭외적 사건에 대해 적용될 준거법을 특별히 명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
 소송 과정에서 당해 사건에 적용될 외국의 판례나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법원이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그 외국법률의 의미와 내용을 확정하였다면, 법원이 준거법을 특별히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달리 위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0041, 30058 판결)

☐ 신용장대금지급등 청구(예비적 병합, 외화채권)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390,367.05달러 및 그중 329,957.28달러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미화 662,470.40달러에 대하여 같은 해 7. 28.부터, 나머지 397,939.37달러에 대하여 2014. 9. 27.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위 강제집행 불능시에는 위 돈을 강제집행일 현재 원고 고시 미합중국 통화 대고객전신환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를 지급하라. 제1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서류를 인도하라. 제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390,367.05달러 및 이에 대한 2014. 9. 27.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신용장 매입은행이 신용장 개설은행에게 신용장 서류와 환어음을 제시하였으나 신용장에 부가된 특수조건이 불성취되는 것이 확정되는 등으로 인하여 신용장 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의 제시서류 반환의무의 유무

신용장 매입은행이 신용장 개설은행에게 선적서류 등의 신용장 서류와 환어음을 제시하였으나 그 신용장에 부가된 특수조건이 불성취되는 것이 확정되는 등으로 인하여 신용장 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신용장 개설은행의 제시서류 반환의무에 관하여 신용장통일규칙 등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신용장 제시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은 제시된 서류를 제시인을 위하여 보관하든지 혹은 제시인에게 반송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디(d)항의 규정 등을 유추하여 볼 때 그 제시된 서류는 신용장 서류 제시인 등이 그 서류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신용장 서류 제시인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2983 판결)

☐ 신용장금액지급 청구(외화채권)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234,883.07달러 및 위 돈 중 159,080.87달러에 대한 2014. 3. 18.부터, 75,802.20달러에 대한 2014. 4. 1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위 미합중국 통화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위 미합중국 통화를 강제집행 불능일 현재 대고객전신환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①신용장 거래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환어음 인수인의 어음법상 의무에 관한 준거법이 환어음 지급지 소재지인 중국의 법이지만 환어음이 지급제시되고 인수될 당시 중국에 어음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그 후시행된 중국의 어음수표법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조리에 부합한다고 한 사례

② 다른 신용장 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신용장 조건에 합치하는 환어음이 제시되면 이를 인수하고 만기에 지급한다는 취지의 신용장 특수조건이 신용장 첨부서류에 의하여 조건의 성취 여부를 판정할 수 없는 비서류적 조건에 해당하지만 유효하다고 보고, 따라서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으로부터 환어음과 선적서류들을 송부·제시받고 위 특수조건과 동일한 내용을 통지한 것을 가지고 신용장 서류 전체의 접수를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35037 판결, 공2000하,1593)

☐ 신용장매입대금 청구(외화채권)

1. 피고는

가. 원고 ○○은행에게 미화 564,850달러 및 그중 미화 233,000달러에 대한 2012. 10. 16. 부터, 미화 127,750달러에 대한 2012. 10. 30.부터, 미화 39,250달러에 대한 2012. 12. 2.부터, 미화 164,850달러에 대한 2013. 1. 12.부터 각 2013. 8. 5.까지 연 6%의, 2013.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나. 원고 주식회사 삼성은행에게 미화 566,260달러 및 그중 미화 97,600달러에 대한 2012. 10. 2.부터, 미화 53,650달러에 대한 2012. 10. 6.부터, 미화 298,700달러에 대한 2012. 10. 7.부터, 미화 116,310달러에 대한 2012. 12. 24.부터 각 2013. 8. 5.까지 연 6%의, 2013.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다. 위 각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 각 금액을 강제집행일 현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한 미국달러 대고객전신환매도율로 환산한 원화 금액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신용장의 수익자가 '사기행위'를 한 경우에, 신용장의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에 대하여 그 매입대금의 상환을 구함에 있어 매입은행의 선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신용장의 수익자가 개설의뢰인에 대하여 '사기행위'를 한 경우에, 신용장개설은행에 대하여 그 매입대금의 상환을 구하는 신용장매입은행이 그 '사기행위'에 공모하였거나 그 행위를 알고 있었다면 개설은행은 영미법상의 이른바 사기규칙(Fraud Rule)에 기하여 그 상환을 거절할 수 있는바 이 경우 매입은행의 선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입대금의 상환을 거절하는 개설은행에게 있다.(1994.7.22. 93가합54182)

☐ 신용장개설대금반환 청구(원화 및 외화채권)

1. 피고는 원고에게 35,140,000원 및 독일화 95,280마르크와 위 돈 중 12,8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2.부터, 22,340,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11.부터, 독일화 60,000마르크에 대하여는 2011. 7. 5.부터, 독일화 35,280마르크에 대하여는 2011. 7. 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① 운송인이 항공화물운송장과 상환 없이 수하인인 신용장개설은행의 화물선회보증서를 받고 화물을 인도한 경우의 법률관계

항공화물운송장은 선하증권과는 달리 그 자체에 화물에 대한 어떠한 권리가 화체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운송인으로서의 항공화물운송장과 상환 없이 운송계약상의 수하인인 신용장개설은행의 화물선회보증서를 받고 그에 기하여 신용장개설의뢰인에게 화물을 인도한 이상 운송계약상의 운송인으로서의 인도 의무를 다한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제3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란 있을 수 없으며, 신용장개설은행으로서도 위 화물에 관하여 개설된 신용장의 유효기일이 도과함으로써 신용장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 후에는 신용장개설의뢰인으로부터 예치받은 예치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② 신용장개설의뢰인이 취소불능신용장의 개설약정을 취소 또는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불능신용장이 일단 유효히 개설되고 수익자를 거쳐 적법히 지급제시된 경우 신용장개설의뢰인은 신용장의 수익자, 개설은행 등의 합의가 없는 신용장개설약정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없다.(1994.9.29. 선고 94가합32455 판결)

☐ 신용장매입대금 청구(예비적 병합, 외화채권)

1.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527,250.25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3. 1.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위 미합중국 통화에 대한 강제집행 불능시에는 위 미합중국 통화를 강제집행일 현재 한국의환은행이 고시한 미화 대고객전신환매도율로 환산한 원화 금액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취소불능 화환신용장에 부가된 “최종매수인이 선하증권의 선적일로부터 75일 내에 신용장에 언급된 상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인수된 어음과 서류들은 만기일에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특수조건의 의미는 문언 그대로 그 조건이 불성취되는 경우 신용장개설은행은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지 상당 기간 그 지급 만기를 연장할 권한을 유보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0. 5. 30. 선고 98다47443판결, 공2000하, 1522)

☐ 신용장대금지급등 청구(파산채권확정)

1. 원고는 파산자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2,793,629,870원의 파산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 매입은행으로부터 제시된 서류의 수리를 거절할 경우, 하자사항의 통보는 서류의 접수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제7은행영업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모든 하자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이후 추가적인 하자사항을 이유로 다시 거절 통보를 할 수 없으며, 추가적인 하자사항을 이유로 서류의 수리를 거절할 수도 없다.(서울지법 1999. 5. 선고 97가합29214 판결)

☐ 신용장매입대금반환 청구(외화채권)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50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3. 4.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19%,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 예비적 청구취지)

1.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513,808달러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3. 9. 21.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부당이득 또는 착오로 인한 매매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함)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520,794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하자담보 책임으로 인한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함)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50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7.부터 이 사건 2013. 12. 13.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화환신용장 거래에서 발행된 환어음의 소구역건인 적법한 지급제시를 갖추기 위하여는

환어음뿐만 아니라 선적서류도 함께 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화환신용장 거래에서 선적서류 및 개설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한 환어음이 함께 발행·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적서류의 제시가 어음법상 지급제시나 소구의 법정요건은 아니므로, 그 환어음의 소지인인 매입은행이 환어음상의 지급인에 대하여 환어음을 제시하였을 뿐 선적서류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그 지급제시가 부적법하다거나 어음법상 소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41516 판결)